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현행법령상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처에 위탁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, 군인 재해보상법령 소관기관인 국방부는 사망보상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보훈처는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하는 형태의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짐.

나.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수행 중인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국가보훈처에 위탁한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가. 국방부장관은 군인 사망보상금에 관한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신설(제61조 제2항 제3호 신설)

나.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되 사망보상금의 청구서 접수에 관한 업무는 위탁하도록 함.
(제61조제4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소요 예산은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2. 17. ~ 2021. 3. 30.) 결과, 특기할

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

-

대통령령 제 호
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 제2항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“지급 및 환수”를 “청구서 접수”로 한다.

3.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. 1. 2. <생략> <신설>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<u>지급 및 환수</u>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.	제61조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. 1. 2. <현행과 동일> 3. <u>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</u>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<u>청구서 접수</u>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군인연금과	
연 락 처	02-748-6671